현지조사 거짓 · 부당청구 확인사례

거짓청구 VS 부당청구 거짓청구 진료비 청구의 원인이 되는 진료 행위가 실제 존재하지 않음에도 관련서류의 거짓작성 또는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진료비를 청구한 행위

• 입원 및 내원 거짓 또는 증일청구

- 미실시 행위료등 청구
- 비급여대상 진료후 이중청구
- 부당청구 <mark>진료비 청구의 원인이 되는 진료행위는 실제 존재</mark>하나, 진료행위가 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이루어진 진료비 청구행위
- 요양급여 산정기준 위반청구행위료, 의약품 등 대체청구
 - 인력,시설,장비 신고 위반청구
 -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등

의원급 실사 '비급여 이중청구' 가장 많아

유형 빈도 사례

복지부 실사 다빈도 사례 분석표 (2016. 10. 31. 의협신문)

비급여 이중청구	43건(39.8%)	▶ 비급여 과정에서 진찰료 청구(피부 미용시술,
		예방접종, 단순 영양제 투여)
		▶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청구
거래량-청구량 불일치	15건 (13.8%)	▶ 주사제, 1회용 겸자, 하기도증기흡입시 흡입제
		등의 거래량이 청구량보다 적은 경우
검진당일 대장내시경 청구	13건(12.0%)	
임의 비급여	11건 (10.2%)	▶ 주사제, 수액제, 검사 등 급여항목을 비급여로 청구
본인부담금 할인	9건(8.3%)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위반	9건 (8.3%)	▶ 무자격자 진료보조
		▶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 전화상담후 청구
		▶ 일회용 주사기나 겸자 재사용 등
미진료 청구	3건(2.7%)	▶ 입원중 외출 · 외박 환자 청구
		▶ 가족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치료 청구
기타 다빈도 사례	21건 (19.4%)	▶ 외이도이물제거 관련

• 약제 및 물품 관리 시 남아있는 양을 기준으로 재구입하면 안 되고 청구양을 기준으로 재구입해야 한다.

• 행위료의 경우 행위를 했다는 기록 외에는 다른 어떠한 물증이 없는 상태임. 실사 시 수진자들에게 전화로

⑥ 본인부담금 할인 : 환자 유인행위로 간주하며, 할인된 본인부담금과 연관된 공단 청구 금액을 허위 청구로 간주함

● 직원 할인 / 직원 가족 할인의 경우 모두 불법임(할인을 해줄 경우 그 차액만큼을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해서

관련근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와 의료법 제22조(진

관련근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와 의료법 제22조(진

부당사례 1) A, B의원은 실시하지 않은 당검사(반정량)를 실시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거짓 기록한 후 검사료

관련근거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7장 이학요법료 - 해당항목의 물리치료를

부당사례 1) A의원은 근막염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 ㅇㅇㅇ에게 실제 시행하지 않은 표층열 치료(MM010)

와 단순운동치료[일당](MM101) 등을 시행한 것으로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상근물리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

2) B의원은 이학요법 처방은 하였으나 물리치료 실시 기록대장을 확인한 결과 심층 열치료 [1일당](MM020)

경우,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예방진료로써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등은 비급여 대상이므로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할 수 없음.

부당사례 1) A의원은 비급여대상인 모공, 안면홍조 등 <mark>피부관리</mark>를 위해 2일간 내원한 수진자 ㅇㅇㅇ에 대해 부분 혈

관련근거 건강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관련[별표2]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1) A의원은 독감접종을 위해 내원한 수진자 ㅇㅇㅇ에 대하여 진찰 및 독감접종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전액 징수하였음에도 '소화불량(K30)' 상병으로 내원하여 진료받은 것으로 진찰료를

2) B의원은 단순비만을 진료 후 비용을 비급여로 전액징수 후 '상세불명의 고혈당증(R739)' 상병으로 진찰료

관련근거 건강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관련[별표2]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료기록부 등) 제1항 등에 의거 요양기관에 내원한 수신자에 대하여 실제 진료한 내역을 기록한 진료기록부

2) C의원은 인성검사-간이정신진단검사(F6216), 치매척도검사[GDS](F6221)를 실시 하지 않고 해당 검사

료기록부 등) 제1항 등에 의거 요양기관에 내원한 수신자에 대하여 실제 진료한 내역을 기록한 진료기록부

하였고, 이틀은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으로 거짓기록하고 진찰료 등을 청구 2) B의원은 수진자 ㅇㅇㅇ의 경우, 2013년 5월 4일, 5월 8일, 5월 13일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M750)'

▶ 대리청방 관련

▶ 직원상근관련 여부▶ 직원 및 친인척 진료

• 특히 수진자의 해외 출국 기록 확인함(출국 기간 중 진료 기록이 있으면 문제가 됨) ③ 거래량 / 청구량 불일치

② 미진료 시 진찰료 청구

거짓청구 유형(허위청구)

① 비급여 이중 청구

• 혹시 DC를 하신다면 DC 때 사용하시는 유착 방지제 및 영양제의 경우 기록을 남기지 않을텐데, 물품 매입 기록과 재고량이 너무 차이가 나면 의심받을 가능성 있음

④ 처치 /행위료 허위 청구

⑤ 미실시 검사 허위 청구

• 질정 조심

• 기록이 없으면 허위 청구로 몰아가려 함.(특히 원내 검사 결과 관리 잘해야 함)

• 직원 약 처방 때문에 접수 후 약 처방하고 본인 부담금 안 받으면 안됨.

• 실사 시 방사선 검사 기록(PACS나 필름) / 임상 병리 검사 결과지 등으로 확인함

확인해서 그런 진료 행위를 받은 기억이 없다는 진술을 받으려 함.

• 비급여 진료(예방 접종, 비만 치료 등) 후 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

• 비급여 항목을 비급여로 받고 급여로 다시 청구하는 경우

• 국가암 검진 시 진찰료를 청구하는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은 일자에 내원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특히 수진자의 해외 출국 기록 확인함. (출국 기간 중 진료 기록이 있으면 문제가 됨)

- 등에 의하여 정확히 청구하여야 함. 부당사례 1) A의원은 수진자 ㅇㅇㅇ에 대해 4일 외래진료를 받은 것으로 청구하였으나, 실제로는 <mark>이틀만 내원</mark>
 - 상병으로 내원하여 진료받은 것으로 청구하였으나, 실제로 2013년 5월2일부터 5월 14일까지 <mark>해외출국</mark> 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기록 후 청구

• 특히 직원 할인의 경우 조심해야 한다.

세무상 증빙 서류를 만들어 놓아야만 합법임)

실제 시행하지 않은 이학요법료 거짓청구

부당사례

실제 시행하지 않은 검사료 거짓청구

등에 의하여 정확히 청구하여야 함.

등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관련근거 건강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관련[별표2]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비급여대상(피부관리)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를 실시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관 레이저 등을 시술하고 그 비용을 <mark>비급여로 환자에게 전액 징수하였음</mark>에도 '장미색잔비늘증(비강진)(L42)' 상병으로 진찰료를 요양급여 비용으로 이중청구함

비급여대상(예방접종, 비만)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 경우,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예방진료로써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등은 비급여 대상이므로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할 수 없음.
-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함

비급여대상(희망검진)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함

- 경우,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예방진료로써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등은 비급여 대상이므로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할 수 없음.
- 부당사례 1) A의원은 <mark>본인 희망검진으로</mark> 내원한 수진자 ㅇㅇㅇ에 대해 그 비용을 <mark>비급여로 전액 징수하였음에도</mark> '만성 표재성 위염(K293)' 등의 상병으로 진찰료 및 검사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함
 - 공단 건강검진 실시 후 검진비용 및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건강검진기본법('08.3.21 제정, 법률 제8942호)
 - 건강검진실시기준, 암검진실시기준 등
 부당사례 1) A의원은 검진항목에 포함되어있는 혈당검사 등의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검진비용으로 청구하

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